

의안 번호	2-16
----------	------

제출년월일: 2001. 5. 1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1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2. 주 요 골 자

2001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심의대상은 취득이 토지매입 1건, 3필지, 2,000㎡, 7,432. 천원이고, 건물신축 2건, 2동, 1,300㎡, 2,120,000 천원이며,

교환은 2 건으로서, 취득이 8 필지, 25,672 ㎡, 273,699 천원이며, 처분은 4 필지, 27,242 ㎡, 277,088 천원 입니다.

1) 마하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종합민원실)

하절기 레프팅 및 행락인파 급증으로 교통이 혼잡하며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주차 및 회차 공간이 없는 실정이므로, 마하리 338번지 외 2필지 2,000 ㎡를 매입하여 주차장 300평 및 화장실, 급수, 벤취, 파고라 등 휴식시설 300평을 조성하여 마을자치회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2) 천동리 마을회관 신축 (자치행정과)

1972년 신축한 천동리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벽체가 균열되고 지붕이 파손되어 비가

새는 실정으로 마을회관 신축 건의가있어, 천동리 266-3번지에 목조황토 1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대화도서관 신축 (문화관광과)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및 정보 문화 보급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대화도서관 신축은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200㎡로서, 사업비 2,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군비1,000)을 투자하여 대화리 1172-1번지에(대화면사무소 인접) 신축 하고자 합니다.

4)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부지 교환 (재무과)

98.7.1.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개편으로 평창 정선이 통합되어, 통합 청사 신축부지로 전 농업기술센터 예찰답을 협의해 음에 따라, 직원 20 여명의 국가기관 유치를 통해 우리군 농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키 위해, 중부리 508-8번지 외1필지 2,614㎡, 20,877 천원을 (감정가 68,617,500원) 출장소 부지로 제공하고, 상진부 245-23번지 2,300㎡, 69,690천원을 (감정가 69,000,000원) 교환 취득하고자 합니다.

5)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부지교환 (도시경제과)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 소유인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수하리 156-17번지 외2필지, 11,772㎡) 및 대관정 부지 등(차항리 29-5번지 외3필지, 11,600㎡) 총 7 필지, 23,372㎡, 204,009 천원을 취득하고, 감자원종장에서 희망하는 용산리 220-5번지 외1필지, 24,628㎡, 256,131천원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3. 관계법규 및 지침(발체)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총괄표 (7-1)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², 천원)

구분			합계			당초			변경계획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9	237,971	433,632	6	210,299	152,501	3	27,672	281,131
		건물	9	4,056	4,200,560	7	2,756	2,080,560	2	1,300	2,120,000
		기타									
	매입	토지	7	212,299	159,933	6	210,299	152,501	1	2,000	7,432
		건물									
		기타									
	교환	토지	2	25,672	273,699				2	25,672	273,699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9	4,056	4,200,560	7	2,756	2,080,560	2	1,300	2,120,000	
	기타										
처분	합계	토지	2	27,242	277,088				2	27,242	277,088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2	27,242	277,088				2	27,242	277,088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1년도 취득재산 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 천원)

번호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지 목	소 재 지	수량				
합계	3 건	토지 1 건, 3 필지 건물 2 건, 2 동	2,000 1,300	7,432 2,120,000			
1	소 계		2,000	7,432	상반기	주차장, 편의시설	
-1	전	마하리 338	489	1,760	"	"	이병권
-2	답	마하리 339	1,351	5,133	"	"	이병권
-3	답	마하리 340-3	160	539	"	"	이병권
2	목조황토	천동리 266-3	100	120,000	하반기	천동리 마을회관	신축
3	철,콘,스	대화리 1172-1	1,200	2,000,000	하반기	대화 도서관	신축

※ 건물은 예산액으로 작성 하였음

2001년도 교환재산 목록(7-3)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환 면적	공시지가 가액	교환 시기	교환사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지적						
1	취득	전	상진부245-23	2,300	2,300	69,690	상반기	농산물품 질관리원 출장소	국 농림부	
	처분	소계	2 필지	2,614	2,614	20,877				
		답	중부리508-8	1,039	1,039	8,592				
		답	중부리508-201	1,575	1,575	12,285				
2	취득	소계	7 필지	108,744	23,372	204,009	상반기	도암하수 종말처리 장부지취 득	강원도	
		전	수하리156-17	7,275	7,275	93,848				
		전	수하리156-15	2,123	2,123	6,645				
		전	수하리156-20	2,374	2,374	7,431				
		전	차항리 29-5	85,375	9,388	84,679				
		전	차항리 29-6	3,226	115	1,053				
		전	차항리 29-18	2,321	864	9,245				
		임	차항 산161-2	6,050	1,233	1,108				
	처분	소계	2 필지	24,628	24,628	256,131				
		전	용산리 220-5	13,949	13,949	145,069				
		전	용산리 220-6	10,679	10,679	111,062				
합계	취득	2건	8 필지	111,044	25,672	273,699	2001년			
	처분	2건	4 필지	27,242	27,242	277,088				

관 계 법 규 (발취)

지 방 재 정 법

-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2001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의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 예정지로서 장차 공공청사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토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5. 재산의 처분기준

다. 재산의 교환기준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다른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잠종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이외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수 있다.

(2) 전항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이어야 하고,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지 못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국공유 상호간 혹은 사-공유 상호간 점유재산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정리를 추진하여야 한다.